

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업명		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
	소재지	본사			본사 전화번호
		연구소			연구소 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			
기업유형					
[] 일반기업 [] 외국계 기업 [] 벤처기업					
기업 요건	의약품 매출액				
	의약품 연구개발비				
	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				

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
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(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합니다) 2. 기업의 대표자, 소재지, 재무현황,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자료 3.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. 연구인력 현황 자료 5.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.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.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.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.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.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.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.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13. 「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